

새해 어항예산 두 배

기반시설 완성 경쟁력을 강화

崔 文 煥

(水産廳 漁港課 管理擔當)

어항개발 연혁 및 제도

우리나라 어항건설의 역사를 회고해 보면 수산청 발족 이전('55-'61)인 1961년 이전에는 해무청 시설국 항만과에서 이 업무가 소관되어 항만과 함께 개발되었으며 그 후 농림수산부 어선어항과에 소관되었다가 1966년 수산청 발족이후 수산청에서 본격적으로 개발을 시작했다.

제도적으로는 어항법이 1969.12.18 제정 공포되어 제1,2,3종 어항의 종류가 규정되고 어항의 지정, 해제,

관리, 시설계획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항의 개발을 촉진하고 그 이용과 관리의 적정을 도모하여 수산업 발전에 기여하여 왔다.

그후 24년이나 지나 어항법을 개정하였으며 그간 어항여건의 변화에 따른 규정상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한편, 어항기능을 활성화 하기 위하여 어항시설의 범위를 확대하고 어항구역을 기본시설구역, 기능시설구역, 복지시설구역으로 구획하여 기능시설, 복지시설등을 균형에 맞게 종합적으로 개발가능토록 했다. 또한 어항이 어업활

동의 근거지로서 어선의 안전 정박, 선수품 보급등 출어준비, 어획물 양륙과 유통기지로서 하역 및 시장형성 출하를 위한 수송터미널, 수산가공기지등 기능시설을 구비토록 하고, 어촌 지역사회 핵으로서의 역할과 어촌주민의 생활 및 경제권 중심지와 어업 관련산업을 주로 하는 지역경제 발전의 기반이 되며 도로나 벽지에 있어서 어촌과 외부사회를 연결하는 교통, 정보의 기지가 되도록 어항시설의 종류를 다양하게 구제적으로 명시하고 개발 및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하였다.

(어항법 제2조 어항시설 참조)

어항의 지정기준은 금년에 어항법에 시행규칙으로 제정하면서 제1종어항은 종전과 같이 해상거리 10km이내 제1종 및 제3종어항이 없고, 해상거리 5km 이내에 제2종어항이 없는 곳으로서 어선의 이용범위가 전국적인 어항인 경우로 규정했다. 제2종어항은 어항간의 거리에 관계없이 지역어선을 보호할 수 있는 곳으로서 어선의 이용범위가 지역적인 어항으로 규정하고 제3종어항은 해상거리가 종전의 20km에서 10km 이내에 1.3종어항이 없는 곳으로서 어업지원기지, 어항의 개발 또는 어

선의 긴급대피에 필요한 어항으로 규정하고, 기타 어항지정의 요건이 되는 어선수, 어선톤수, 어획량등의 기준을 수산청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개발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이에 따라 수산청에서는 제1종어항은 지정하고자 하는 항의 지방어선수가 60척이상으로서 그 합계 총톤수가 200톤이상이고 외래어선이 연간 100척이상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연간 어획량이 500톤

이상인 곳으로, 제2종어항은 그 지방의 어선수가 20척이상이고 그 합계 총톤수가 50톤 이상인 곳으로, 제3종어항은 인근에 어장이 형성되어 있고 연간 1,000척 이상의 외래어선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곳으로 규정한 세부규정을 수산청 훈령 612호로 제정 시행하고 있다.

어항개발의 실태

전국에 2,000여개가 넘는 항포구중에 일정한 요건을 갖

〈표 1〉 어항 지정 현황

(’94. 2 현재)

관리청 시·도	합 계	수 산 청			시·도 2종
		소 계	1종	3종	
계	407	83	50	33	324
부 산	8	1	1	-	7
인 천	7	-	-	-	7
경 기	37	4	-	4	33
강 원	26	10	10	-	16
충 남	35	5	4	1	30
전 북	18	5	1	4	13
전 남	131	24	10	14	107
경 북	35	11	9	2	24
경 남	89	16	10	6	73
제 주	21	7	5	2	14

- 항간거리 : 28.3KM

※ 일본지정어항수

제1종	제2종	제3종	제4종	특정 제3종	계
2,224	513	101	100	13	2,951

- 항간거리 : 11.6KM

〈표 2〉 투 자 실 적

(단위 : 억원)

	총사업비	'93까지	'94 계획	잔사업비
계	17,720	5,923	1,045	10,752
제1.3종어항 (83개항)	11,001	4,812	570	5,619
제2종어항 (324개항)	6,719	1,111	475	5,133

추고 있는 곳을 천연 또는 인공의 어업근거지로서 개발하기 위하여 어항법에 따른 어항으로 지정한 곳은 〈표1〉과 같이 1.3종어항 83개항, 2종어항 324개항으로 모두 407개항이며, 해안선 길이 11,542km에 대하여 평균 항간거리가 28.3km이다. 이는 일본의 평균 항간거리 11.6km와 비교하면 항간거리면에서 개발이 매우 많이 떨어진 실정이며 지정어항수면에서도 일본은 2,951개 항이나 되지만 우리는 개발의 여지와 개발수요는 많으나 개발은 다른 SOC 시설과 비교우위에서 떨어지고 있다. 이는 국가 재정형편이 미치지 못함과 관계부서와 사계에 올바른 인식제고를 위한 어항인의 홍보와 설득력 부족인 것으로 사료되어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

투자실태를 살펴보면 〈표2〉와 같이 제 1.3종어항 83개항의 총사업비 1조 1,100억원,

'94년까지 5,382억원을 투자하고도 5,619억원이 남아 있어 현재 연간 투자규모로는 소요기간이 향후 10년이상 소요되며 제2종어항의 경우 324개항의 총사업비 6,719억원에 대하여 '94년까지 1,586억원이 투자되고 5,200억원 상당의 사업비를 남겨두고 있어 완공하기 위하여는 요원한 실정이라 볼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어항시설을 꾸준히 추진하여 왔으나 개발수요에 비해 투자미흡으로 개발이 지연되어 태.폭풍등의 자연재해에 따라 어선피해가 빈번하였다.

그 예로서, '85년에 브렌다 태풍으로 1,595척 1,299억원의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89년에는 셀마 태풍으로 6,593척 3,177억원의 큰 피해가 발생한 것을 들 수 있다.

어촌의 형편과 어항시설
우리 어항어촌의 실태를 살

펴보면 소득면에서는 도시는 물론이고 농촌보다도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다.

'93년말 현재 도시근로소득 평균 17,734천원, 농가소득 16,928천원, 어가소득 14,432천원으로 농가소득과 비교하여도 85.3%에 불과하다.

수산분야 사회 간접자본시설인 어항시설의 투자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취약하여 항당 연간 투자액이 신규착공 1.3종항의 경우 항당 2-3억원, 착공후 5-6년 이상된 항으로 집중투자 대상항이 20-30억원 정도 투입되는 실정이라서 어항 기본시설 건설이 10-15년간의 장기간이 소요되므로 어항의 기본적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게 되고, 상대적으로 어항어촌은 낙후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었다.

어업자원면에서는 바다의 어족자원은 한계가 있는 것인데 어선의 장비와 어획기술의 발달로 어획강도가 높아짐에 따라 치어까지 남획하는 불법어업의 성행으로 자원이 날로 감소하고 있고 환경면에서도 연안은 육지 공장의 오.폐물, 가축의 분뇨, 인가의 폐수등이 정화되지 못한채 유입되어 해수는 부영양화 상태로 되고 이로 인한 빈번한 적조발생등으로 수산피해가 급증하고,

해저 지질은 양식장의 폐기물, 쓰다버린 쓰레기등의 퇴적으로 수산물의 생산량 신장은 정체되고 있다. 어민의식면에서는 UR타결로 인하여 장차 외국 수산물 수입자유화에 따라 어가의 하락으로 소득이 떨어질 것이 예견되므로 어민의 생산의욕이 떨어져 어촌장래의 불안으로 이어 현상이 가속화 될 우려가 있다.

어촌인구는 '80년 844,000명에서 '93년에는 404,600명으로 48%가 줄어 들었다.

상기와 같은 제반여건을 고려할때 떠나간 어민이 돌아오는 살기좋은 어촌으로 만들기 위하여는 수산업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하여 어민소득 향상의 기반을 조성하는 길 밖에 달리 없다고 생각한다.

수산업 경쟁력 강화의 방안이 여러가지가 제시될 수 있으나 그중 가장 먼저해야 할 것은 낙후한 수산분야 사회간접자본시설인 어항시설의 조기완공이다.

농림수산부가 조사한 어민 소득증대 사업 40개 항목에 대한 어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어민 숙원사업 1위가 어항건설이었으며 지금도 1.3종 어항 지정 및 어항시설 요구의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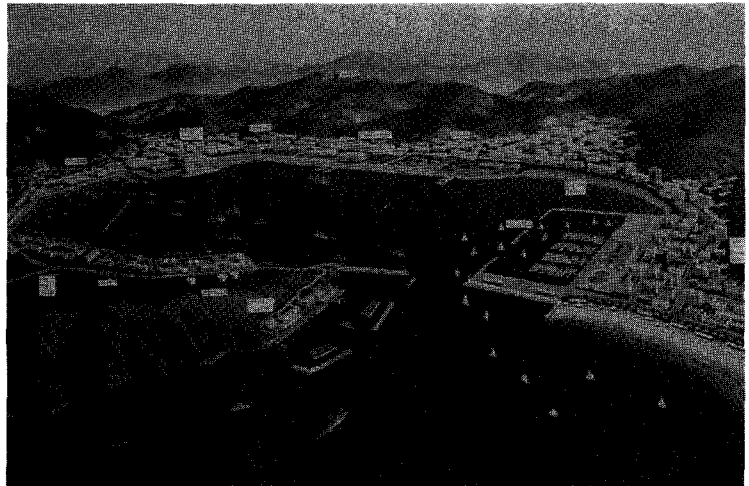
이러한 때에 UR타결이후

농어촌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특세법의 목적사업으로 어항건설항목이 채택된 것을 크게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이를 위하여 어민여론을 수집하고 어촌여건을 분석하여 어항어촌개발 방향을 제시한 농어촌발전위원회 관계위원인 농촌경제연구원의 박성쾌 박사, 부산수산대학교의 최정윤 교

농특세 재원 7,800억원 확보, 투자

어항건설 추진에 있어서는 제1.3종 어항 83개항중 미완공항 35개와 제2종어항 324개항중 미완공 200개항의 조기완공이 현안사항이다.

제1.3종 어항중 미완공항 35개항에 대하여는 착공하진



수에게 지면을 통하여 심심한 감사의 뜻을 표한다.

특히 자료제공과 홍보에 적극 힘써준 한국어항협회에도 감사하는 바이다.

이러한 자료의 뒷받침과 홍보에 따라 어항개발에 대한 사회의 인식전환으로 인하여 어민의 숙원사업이며 수산청의 중요한 시책사업으로 채택된 어항건설의 조기 완공을 실현할 기회를 얻게 된 것이다.

오래되고 공사가 계속 추진중에 있는 항과 최근에 착공된 항을 구분하여 우선 '92년까지 조기완공 추진토록 하기 위하여는 소요액 3,300억원과, 시·도지사가 관리하고 지역어선이 이용하는 2종어항 중 미완공항 200개항을 2004년까지 완공을 위한 소요액 중에 4,500억원을 농특세 재원에서 투자토록 확보하게 되었다. 환언하면 농특세 재원에서 어

항분야에 7,800억원을 배당 받은 것이다.

물론 7,800억원으로 현재 추진중인 어항시설이 모두 완공될 수는 없다.

제1.3종 어항 중 '93년 이후 착공항에 대하여는 일반회계에서 계속 확보 추진하여야 하고 제2종 어항 중 미완공항 200개항을 완성하기 위하여는 농특세 재원 4,500억원이 투입되어도 현재 약 1,000억원 이상 더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2종어항도 규모를 갖추려면 수천억원의 건설비가 증액될 것이며, 이에 대하여는 시·도에서 지방비를 계속 확보하여 제2종 어항을 완공토록 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94년에는 2종 어항건설을 위하여 처음으로 추경예산을 편성, 농특세 재원 300억원을 확보, 각 시·도에 배정 조치하여 사업을 추진중이며, '94년도 추경예산부터 지방재정 취약성을 고려, 지방비 부담 50%를 전액 국고로 지원하게 되었다.

'95년부터는 어항건설에 본격적으로 집중투자하기 위하여 순수시설비만 '94년에 비해 2배가 넘는 1,280억원이 확보되었다.

이는 '92년 이전 착공하고 지금까지 24개항 완공축진을

위하여 농특세 예산 795억원, '93년 이후 착공하여 수축중인 11개항과 기타 유지보강을 위하여 일반회계 297.5억원, 제2종어항 건설을 위한 농특세 예산 국비보조금 187.5억원이다.

그러나 UR타결에 대응하는 어장과 어항어촌을 연계한 어촌정주 조성을 위한 기반시설 조기완공을 위하여는 1회계년도당 2,000억원 정도는 확보 투자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함께 최근 부실시공과 관련하여 수산청에서도 시설공사 철거를 기하고자 부실공사 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안전점검 전담부서를 수산청 시설국 어항과에 설치하고 부실신고센터를 동·서·남해어항사무소에 설치하였으며, 건설업자의 기술수준의 향상과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어항건설 공사의 시공에 관한 평가를 실시, 철저히 시공토록 하고 있다.

제2종어항의 경우에는 견실시공과 종래 분산 투자로 완공기간이 지연되고 투자효율이 저조하였던 것을 집중투자하여 조기완공을 촉진하고 아울러 견실시공과 지역균형개발 및 다수 어민의 수혜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투자대상항에 대하여는 해안 전문기술단의 용역으로 어항조사 실시후

기본시설계획을 수립한 항으로서 1회계년도당 7억원 이상 투자토록 하고 또한 항당 잔여사업비가 23억원 미만인 항에 우선 투자토록 제2종어항 시설사업 집행요령을 제정 시달하였다.

신규어항 확대 지정

수산청은 2004년까지 제1종, 제2종, 제3종어항 233개항을 신규로 지정 개발하는 어항시설 확대사업을 어촌개발을 위하여 투자하는 신수산 투자계획(42조투자 사업의 일환)에 반영하여 개발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민자유치촉진법 및 어항법에 따라 민자로서도 시설 투자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으며, 냉장보관창고, 유통판매시설, 숙박시설등의 기능시설과 복지시설은 민자투자의 좋은 대상이 될 것이다.

2000년대는 우리의 어항이 생산 유통과 관광, 문화시설, 어민복지시설과 교통의 종합기능을 갖춘 살기좋은 어촌으로 발전할 것임을 전망하면서 각계에서 어항에 대한 이해를 깊이하고 어항시설 확대사업에 관심을 가져 주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